

의안번호	2216486
의 퇴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2.20.
추 계 번호	26F0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 채용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교육과정 수료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인건비의 20% (중소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0%)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한 현황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졸업한 인원은 1,814명이고, 이중 계약산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616명임

- 2025년 채용산업체 규모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한 산업체 수는 총 3,665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3,347개(91.3%)

[표 1] 최근 5개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관련 현황

구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자(명) ¹⁾	계약산업체 취업자 수(명) ²⁾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 산업체 수(개) ³⁾			
			중소기업 수	중견기업 및 대기업 수	기타	합계
2021년	1,090	815	1,339	52	34	1,425
2022년	1,321	1,099	2,033	78	44	2,155
2023년	1,631	1,475	2,555	140	29	2,724
2024년	1,672	1,527	3,097	217	23	3,337
2025년	1,814	1,616	3,347	274	44	3,665

주: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졸업자 = 전년도 8월 및 당해 연도 2월에 졸업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포함) 학생 수 + 혼합형 계약학과(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해당 연도에 1학년부터 2학년으로 진학한 학생 수

* 혼합형 계약학과(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혼합한 계약학과로, 1학년에 채용을 조건으로 입학하여 일정 학기 이수 후 재직자로 전환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함. 이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전환되는 시기에 취업하여 재직자로 전환되므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전환되는 시기에 진학한 학생 수로 기입

2) 계약산업체 취업자 수: 졸업 후(혼합형 계약학과와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환 후) 계약한 산업체로 취업하는 학생 수

3) 산업체 수: 졸업자를 고용한 산업체가 아닌 채용조건형(계약정원, 혼합형 포함) 계약학과 개설에 협약한 산업체 수(단순 합계, 중복 포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계약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